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1호

「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월 10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장이 사회적기업등의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사업, 사업개발비 지원, 지역특화사업 지원,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도록 함(안 제10조제1항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실)
(전화 042-270-5132, FAX 042-270-5049, E-mail : kimnm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업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
2. 신상품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
3. 지역특화사업 지원
4.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
5. 사회보험료 지원
6.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-----다음 각 호의 사업을 ----------
<신 설>	1.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및 조기정착 지원
<신 설>	2. 신상품 개발 등 사업개발비 지원
<신 설>	3. 지역특화사업 지원
<신 설>	4.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사업비 지원
<신 설>	5. 사회보험료 지원
<신 설>	6.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·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